

『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흥남이 의원 외 4명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’ 권고안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의 겸직신고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의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구체화 하고,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(안 제5조제1항)
- 겸직 위반자에 대한 사임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제4항)
- 겸직 신고내용 연 1회 이상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제5항)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의 계약체결 제한자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,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, 조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